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250
------------	-------

발의연월일 : 2023. 7. 13.

발의자 : 어기구 · 김승남 · 이개호

서동용 · 박상혁 · 허종식

김정호 · 황희 · 송갑석

유기홍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숲 · 생활숲 ·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함)의 조성 · 관리를 통한 국민의 보건 · 휴양 증진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도시숲등 조성 · 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 ·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민이 도심에서도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누릴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가로수길을 선호하는 등 건강한 가로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시숲등의 조성 · 관리 계획이 10년 단위의 장기적 · 포괄적 계획으로 인하여 변화하는 국민 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가로수에 관한 체계적인 조성 · 관리 계획 역시 부재하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도시숲등의 조성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 ·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원회”라 함)를 두고,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변경 사항이나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조례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를 조성·관리하면서 생육불량 가로수의 발생, 도시시설 설치에 따른 가로수의 우선 제거 또는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등 도시의 가로수가 제대로 조성·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가로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위원회 명칭도 가로수가 포함되도록 하여 가로수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과 연계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도시숲·가로수위원회로 변경하여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가로수를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10년 단위의 도시숲등 조성·관리 계획과 연계된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로수의 제거나 가지치기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함)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다. 기존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도시숲·가로수 위원회로 변경하여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대표성·실행력을 강화함(안 제13조제1항).

라. 도시숲·가로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연차별 가로수계획과 진단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도시숲 · 가로수 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 전의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 ·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 · 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로수의 제거나 가지치기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단조사의 대상과 방법 ·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 제목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도시숲 · 가로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도시숲·가로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제12조제2항제1호”를 “제12조제4항제1호”로 한다.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제26조제2항제1호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 및 진단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거나 진단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숲·가로수위원회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 ~ ⑤ (생 략)</p> <p>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생 략)</p> <p><u><신 설></u></p>	<p>제6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u>도시숲 · 가로수위원회</u>-----</p> <p>-----.</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 · 관리 계획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 · 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③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로수의 제거나 가지치기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u></p>
<p><u><신 설></u></p>	

② · ③ (생략)

④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 도, 구 및 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략)

<신 설>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
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진단조사의 대상과 방법 ·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⑥ -----

-대통령령-----.

제13조(도시숲·가로수위원회) ①

도시숲 · 가로수

위원회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p><u><신 설></u></p> <p>2. <u>제12조제2항제1호</u>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p> <p>3. (생 략)</p> <p>② ~ ⑤ (생 략)</p> <p>제26조(별 칙) ① (생 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u>제12조제2항</u>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p> <p>2. · 3. (생 략)</p> <p>③ (생 략)</p>	<p>3. <u>제12조제3항</u>에 따른 진단조 사 실시에 관한 사항</p> <p>4. <u>제12조제4항제1호</u> ----- ----- ----- -----</p> <p>5.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26조(별 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p> <p>1. <u>제12조제4항</u> ----- ----- -----</p> <p>2.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	---